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20 선고 2019가단84181 판결 [주식매매대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액셀시어

담당변호사 김기철

피 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임태완

변 론 종 결 2020. 7. 9.

판 결 선 고 2020.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3,200,000원 및 2018. 8.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8. 7. 5. 피고와 주식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의 대상 주식 중 ① 20,000주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금 100,0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주권을 교부하고, ② 나머지 32,640주에 대해서는 위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잔금 163,20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주권(이하 위 ①, ②항의 주권 모두를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을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양수도 대상 주식 발행회사인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2020. 1. 10. 파산 선고(서울회생법원 2019하합100525호, 이하 '이 사건 파산선고'라 한다)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163,2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취소에 관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주당 5,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위 회사는 2016. 6. 20. 이후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다가 2018. 8.경에는 부도상태에 이르렀고, 2018. 9. 6. 회생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자본잠식 상태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대상 주식은 주당 5,000원이 아닌 0원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고의 대표이사는 마치 위 주식의 주당 5,000원

이상의 실질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하여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사의 현재본질가치를 은폐하였다.

나) 또한 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1항과 관련하여,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가상화폐(D) 사업을 위해 소프트캡 3백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이미 받았고, 2018. 10. 이전에 하드캡 2천만 달러의 투자유치를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회사가 가상화폐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하여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사의 미래본질가치를 은폐하였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하는 모든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대표이사가 마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주당 5,000원 이상의 실질 가치가 있는 회사라고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하여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사의 현재본질가치를 은폐하였다거나, 위 회사가 가상화폐 사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낼 것이라고 착오를 유발하고 기망하여 주식매매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회사의 미래본질가치를 은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주권교부의무와 피고의 위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에도, 원고는 위 주권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되어 원고의 위 주권교부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행불능으로 인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피고의 2020. 5. 18.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와 이 사건 주권의 교부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이 사건 회사는 주권을 발행한 사실이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권을 피고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주권을 교부할 준비도 하지 못하였다.

○ 이 사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파산선고에 따라 위 회사는 청산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위 회사는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존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의 주권발행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지명채권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만으로 피고의 주식취득 효력이 발생하고, 피고는 단독으로 위 회사에 대하여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상에 ‘주권을 교부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① 주식양도 시 주권이 발행되었다면 실물 주권을, ② 주권 미발행의 경우라면 그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당사자 사이의 주권교부 약정이 없는 경우에 타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와 피고는 매매대금의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의무와 이 사건 주권의 교부의무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으로 약정한 점, 위와 같은 약정을 한 데에는 위 매매계약 제4조, 즉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고, 위 주식에 대하여 피고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사유가 없을 것을 보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양도와 취득 및 그에 따른 대항과 위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의무의 이행은 별개의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봉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

본 주식 양수도 계약서는 아래 양수인, 양도인 사이에 2018년 7월 5일 체결되었다.

양수인(이하 "갑"이라 한다)

상 호 :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 빌딩 4층

대표 이사 : []

양도인(이하 "을"이라 한다)

성명: []

주소: [] Los Altos, CA, []

양수도 대상 주식 발행회사(이하 "해당회사"라고 한다)

상 호 : 주식회사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 []

대표 이사 : []

제2조(양수도의 목적물)

"갑"이 "을"로부터 양수하는 "해당회사"의 주식은 아래와 같다.

0. "해당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 : 보통주식 200,000주

1. 1주의 액면가액 : 금 5,000원

2. 양수도 대상 주식 내역

가. 주식의 종류 및 수량 : 보통주식 52,640주(26.32%)

나. 주당 양수도 가액 : 금 5,000원

다. 총 양수도 대금 : 현금 및 [] 주식을 포함한 263,200,000원

제3조(양수도 대금의 지급, 주권의 교부 및 발행)

1. "갑"은 제2조에 규정한 "을"의 보유 지분 20,000주에 대하여 양수도 대금 중 현금 금100,000,000원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을"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을"은 "갑"에게 해당하는 금액의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주권을 교부한다.

구분	현금	지급시기
선금	100,000,000원	계약후3일이내
잔금	163,200,000원	계약후45일이내

2. "갑"이 "을"에게 잔금 지급 시 "을"은 보유 지분 32,640주(11.69%)를 "갑"에게 교부한다.

3. 위 1,2항에 따라 "갑"이 주권을 교부 받는 날에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해당회사"의 주주 지위가 "을"에서 "갑"으로 이전되며,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이익 배당 청구권, 신주인수권, 의결권 기타 양수도 대상 주식에 부여된 모든 권리가 "갑"에게 이전된다.

제4조(보증 사항)

1. "을"은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을 가진 소유자이고, 양수도 대상 주식에 대하여 "갑"의 권리 행사에 법률상, 사실상의 제한 또는 장애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5조(특약 사항)

1. "갑"과 "을"의 가상 화폐 [] 사업에 관하여 상호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 사업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지분 매각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가수하며, 이는 별도 계약을 통하여 진행한다.